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국가정보원 / 경찰청 / 검찰 PROSECUTION SERVICE	**보 도 자 료** **2021. 9. 16.(목)** 청주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김경수 전화 043-299-4381 / 팩스 0502-193-5204

제 목	**'자주통일 충북동지회'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구속 기소**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※ '21. 9. 13.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

❑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는 **북한 공작원의 지령**을 받아 **이적단체 '자주통일 충북동지회'**를 결성한 후, 4년간 충북지역에서 암약하며 북한으로부터 **공작금을 수수**하고, **국가기밀 탐지, 국내정세 수집** 등 각종 **안보 위해 행위**를 한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**3명을 구속,** 2021. 8. 20.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.

❑ 청주지방검찰청 형사3부(부장검사 김용식)는 보완수사를 거쳐 2021. 9. 16. 피고인들을 **국가보안법위반**(간첩, 특수잠입·탈출, 이적단체의구성, 회합·통신, 금품수수, 편의제공)**죄** 등으로 **구속기소**하였습니다.

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1. A○○(57세, 협동조합 이사, '자주통일 충북동지회' 고문)

① '17. 5. 중국 북경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일명 조○○과 회합하면서 충북지역 비밀 지하조직 결성 및 운용에 관한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으로 입국 **(특수잠입·탈출, 회합·통신등)**

② B○○, C○○, D○○와 공모하여 '17. 8.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'조선노동당 충북지역당'으로서 이적단체인 '자주통일 충북동지회'를 결성 **(이적단체의구성등)**

③ ’18. 5.~7. ’자주통일 충북동지회‘ 조직원들과 함께 북한의 ‘대남혁명전략’과 동일한 내용의 사상학습 실시(**찬양·고무등**)

④ C○○, D○○와 공모하여 ‘20. 3. □□□□□당 충북도당 정책실장으로부터 F-35A 전투기 도입 반대 관련하여 ‘피고인들과 정책연대는 할 수 없다’는 취지의 □□□□□당 입장을 탐지하여 북에 보고(**편의제공**)

2. B○○(여, 50세, 간호사, ‘자주통일 충북동지회’ 연락담당)

① 북한 공작원과 연락업무를 담당하면서 ‘18. 1.~ ‘21. 1. 총 35회에 걸쳐 암호자재인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북한 지령문을 수신하고 대북 보고문을 발송(**회합·통신등**)

② C○○와 공모하여 ‘19. 11. 19. 중국 심양에 있는 월마트 무인함에서 북한 공작원이 보관하여 둔 공작금 미화 2만 달러를 수수(**금품수수**)

③ C○○, D○○와 공모하여 ’19. 8.~’20. 2. ‘청주공항 F-35A 도입 반대 투쟁 전개’ 지령을 수수하고, F-35A 도입 반대 취지의 1인 시위, 기자회견 개최 및 기사 게재(**찬양·고무등**)

3. C○○(여, 50세, 협동조합 이사, ‘자주통일 충북동지회’ 부위원장)

① B○○와 공모하여 ‘18. 4.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일명 이○○, 조○○을 회합하면서 ◇◇당 입당 등 ‘자주통일 충북동지회’의 조직역량 강화,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임무 등에 관한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으로 입국 (**특수잠입·탈출, 회합·통신등**)

② ‘19. 7.~8.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’자주통일 충북동지회‘ 하위 조직원 영입을 위해 ◇◇당 충북도당 간부의 신원자료, 사상동향 등을 탐지(**간첩**)

③ D○○와 공모하여, ‘19. 10. 피고인들이 조직한 ◇◇당 분회에서 독자적으로 21대 총선 예비후보로 출마한 것을 계기로 ◇◇당 윤리위에 제소되자,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윤리위의 진행상황, 심의내용 등을 탐지(**간첩**)

④ ‘20. 5.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‘충북지역 농민운동은 학생운동 출신이 주도하고 있다’는 취지의 ‘충북지역 농민운동 실태 및 전망’ 자료를 북에 보고(**편의제공**)

⑤ ‘17. 6.~‘21. 5. 총 65회에 걸쳐 암호자재인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북한 지령문을 수신하고 대북 보고문을 발송(**회합·통신등**)

⑥ ‘21. 5. 27. ‘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’ 등 이적표현물 1,395건 소지(**찬양·고무등**)

2 주요 수사 경과

○ ‘17. 7.~‘19. 4. 국가정보원 이메일 등 압수수색 영장 집행

○ ’21. 5. 12. 및 14. 체포영장,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각 2회 기각

○ ’21. 5. 27. 주거지 등 압수수색 영장 집행

○ ’21. 8. 2. A○○, B○○, C○○ 구속 / D○○ 구속영장 기각

○ ‘21. 8. 18. D○○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

○ ‘21. 8. 20. A○○, B○○, C○○ 검찰 송치

○ ‘21. 8. 26. ~ 9. 1. 계좌추적 및 주거지 추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

○ ‘21. 9. 16. 각 구속 기소

3 참고 사항

○ 불구속 피의자 D○○의 국가보안법위반 범죄 등에 대하여는 현재 검찰과 긴밀한 협력 하에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음

○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빈틈없는 공소유지로 범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

○ 향후에도 검찰은 국가정보원,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, 안보위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음 ▨